

2000년도 금융기관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본 협회는 지난 9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제3회의실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다.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 140여명이 참석한 동 교육에는 공정위 표시광고과 정정길 서기관과 약관제도와 임덕용 사무관이 강사로 초빙되어 표시·광고법 및 약관법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9월 26일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교육을 실시, 79개 사업자단체에서 총 90여명이 참석하였다. 강사로 초빙된 공정위

단체과 나양주 사무관은 동 교육에서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제도와 사례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해외연수 실시

본 협회는 회원사 공정거래담당 임직원과 10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미국의 FTC(공정거래위원회), DOJ(법무부),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선진 경쟁정책당국과 C·P(Compliance Program) 운영 우수업체인 GE(General Electrices), NEC(일본 전기주식회사) 등을 방문하여 공정거래제도 및 이에 대한 C·P 운영상황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동 해외연수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민간업계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업계에서 이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및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매뉴얼)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동 연수에는 LG그룹, SK그룹, 삼성그룹과 한국통신, 신세기통신, 데이콤, 한국통신프리텔 등의 전기통신 관련 회사 및 신세계·뉴코아백화점, 롯데제과와 한솔제지, 진로, 제일제당, 현대산업개발, 전경련, 백화점협회 등의 임직원 26명이 참석하였다.

● 미국

미국의 경쟁정책당국인 FTC의 국제담당 Paul H. Karlsson은 방문단에 대한 브리핑에서 미 경쟁당국은 앞으로도 미국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카르텔에 대한 미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을 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의 독점금지법 역외적용이 공격적이며 적극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미국의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방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DOJ 독점금지국 전기통신사업 Task Force



담당 변호사 Carl Willner는 전기통신회사들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미 사법부는 시장획정과 경제학적 영향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DOJ는 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제주의적 입장보다는 구조를 조정토록 하는 시정명령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하락이나 일정한 시장점유율 유지라는 시정명령보다는 해당시설의 매각, 분할을 요구함으로써 해당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주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내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우수업체 중의 하나인 GE는 본사에 독점금지법을 전담하는 3명의 변호사를 둬으로써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작성과 운영,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GE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종업원들을 위해 해당 국가의 언어로 쓰여진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을 작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GE는 회사의 이익과 독점금지법 위반이 충돌할 경우 임직원으로 하여금 눈앞의 회사 이익을 포기하고 독점금지법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 제고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독점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방문단에 강조했다.

GE사의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에는 서두에서 '미 합중국독점금지법 및 각국의 경쟁법은 GE사 사업환경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에 의해 GE사의 가격결정, 구매활동, 판매활동이 규제된다. GE사는 이러한 독점금지법규를 준수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모든 GE사 종업원은 이러한 독점금지법규를 준수할 책임을 부담하는 동시에 이러한 법규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속히 상사나 법률자문 또는 감독자에게 보고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GE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의 주요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준수사항(Requirements)

독점금지법에 관한 모든 미 연방법, 주법, 관련 외국의 경쟁법 및 기타 관련 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있다.

2) 종업원 책임(Employee Responsibilities)

구체적인 행동지침에 각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독점금지법규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이해할 것을 종업원의 책임으로 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서는 무엇을 하면 안되고 어떤 것은 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격, 판매조건, 고객, 판매지역, 판매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 묵시, 공식, 비공식, 서면, 구두 등의 방법으로 경쟁자와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명하고 있다.

또한 준수사항 하나 하나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또는 독점금지법 준수 프로그램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보고의무를 과하는 동시에 종업원의 보고에 대해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 지도자의 가중책임(Additional responsibilities of leaders)

사업부문의 최고경영책임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작성, 유지와 특정의 상급관리자를 책임자로 지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법령과 법 준수방침상의 준수사항에 종업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권장할 것을 명하고 반대로 무관심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감시할 것을 명하고 있다.

4) 국제적 사업활동에로의 적용(Application to international activities)

GE사 및 자회사의 외국에서의 사업활동이 미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와 외국 경쟁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법률 자문에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다.

5) 위반사례(Examples of violation)

가격협정, 수량협정, 시장분할 등 전형적인 위반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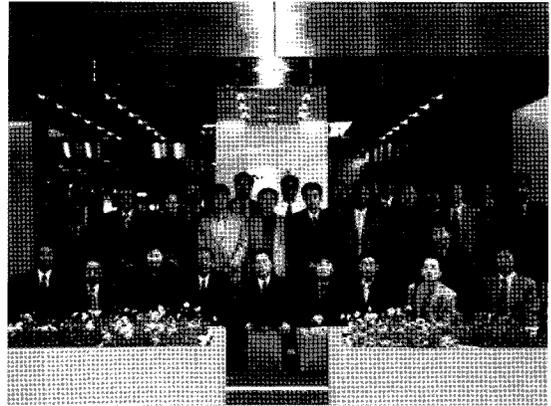
6) 위반에 대한 벌칙(Penalties for violation)

독점금지법 또는 이 방침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을 포함한 징계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의 NEC는 독점금지법 사내 준수를 위해 기업경영감시본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는 종업원들을 직접 1대1로 만나서 그들의 어려움과 불만 등을 청취하고 상담에 응함으로써 예방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NEC의 경우 종전에는 독점금지법 준수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특별 조직은 없이 법무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체제였으나 1988년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



심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때로부터 독점금지법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1988년 8월에 「국내상무부」가 설치되어 독점금지법외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관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동 부서는 1999년에 현재의 「기업행동추진부」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이 부서의 중요 업무는 ① 행동규범에 따른 독점금지법준수 매뉴얼의 제정과 관리, ② 행동규범을 주지시키기 위한 활동, ③ 기업윤리와 각종 법령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교육활동, ④ 실질적인 감시활동, ⑤ 판매부문과 사업라인이 가진 의문이나 질문 등에 대답하는 상담활동, ⑥ 판매수단 등에 대한 사전심사 등 6가지이다.

NEC는 월 1회씩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독점금지법 관련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부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행위가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또한 NEC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반의 정도에 따라 주의조치를 취하거나 심하면 징계 및 해고까지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연수에는 LG Philips LCD의 백승학 부장, SK(주)의 한봉근 부장, 삼성종합화학의 임종태 부장, 뉴코아백화점의 손병렬 이사, 진로의 이동채 과장, SK엔론의 성낙민 부장, LG홈쇼핑의 성기석 차장, 전경련의 양금승 과장, 현대산업개발의 유수영 과장, 신세계백화점의 강연희 과장, 한국통신의 이공환 과장, 한국통신프리텔의 박재철 과장, 데이콤의 정춘홍 과장, 한솔제지의 김종천 과장, 제일모직의 박태균 과장, 신세기통신의 박광희 과장, SK그룹의 이해원 과장, LG텔레콤의 이상민 대리, SK글로벌의 홍성범 대리, 데이콤의 허영춘 대리, 신세기통신의 최진열 대리, 제일제당의 이정국 대리, 한국백화점협회의 김인수 주임과 롯데제과 한광호씨, 그리고 본 협회 조사부 홍미경 부장과 기획부 윤광희 대리가 참석하였다.

계시판

본 협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매뉴얼) 열람 실시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및 우리 나라의 주요 기업의 준수편람(매뉴얼)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에서 이에 대한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본 협회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게 되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에는 GE(미국)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에 관한 가이드, NEC(일본)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 미국 변호사협회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매뉴얼(Allied Signal Inc, Amoco, The BFGoodrich, Chevron, Columbia/Health Care, The Dow Chemical, 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Hogan & Hortson, IBM, IIT, Mobil, Owens-Illinois, Pfizer, The Quaker Oats, Rohm and Haas, Scientific-Atlanta Inc, TRINOVA, United Technologies, Dupont 등), 그리고 우리 나라의 삼성전자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과 LG그룹의 공정거래법 업무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원사 소식 · 신규회원사 소개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일국제법률사무소

대표 민 병 국

서초구 양재동 275-7